

미-EU FTA 방송통신 분야 협상 전망 및 시사점

■ 여 혁 종*

지난 2월 13일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지금까지 미국과 EU 간의 포괄적 FTA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급변하면서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상반기 중에 1차 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미국 및 EU가 기존에 체결한 방송통신 분야 FTA 협상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EU FTA 방송통신 분야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에 대해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 차

- I. 서 론 / 34
- II. 미국의 FTA 협상 추진현황 / 35
 - 1. 미국의 FTA 협상 추진현황 / 35
 - 2. 기타결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 주요내용 / 37
 - 3. 기타결 FTA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 42
- III. EU의 FTA 협상 추진현황 / 45
 - 1. EU의 FTA 협상 추진현황 / 45
 - 2. 기타결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 주요내용 / 46
 - 3. 기타결 FTA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 49
- IV. 미-EU FTA 방송통신 분야 협상전망 / 52
 - 1. 협정문 협상전망 / 52
 - 2. 시장개방 협상 전망 / 54
- V. 결론 및 시사점 / 54

I. 서 론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지난 2월 1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기 정부 첫 연두교서 연설에서 EU와 포괄적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 착수를 선언하였고, 하루 뒤인 13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181, hyukjong@kisdi.re.kr

오바마 대통령과 헤르만 반폼뢰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EU가 오는 6월 전까지 TTIP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과 EU 간의 포괄적 FTA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급변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EU의 FTA 가능성은 1990년대부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양측 모두 낮은 관세구조로 인해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작아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미국과 EU 양쪽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흥경제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글로벌 경제의 무게중심을 다시 서구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서비스 교역, 규범, 투자, 지적권 등을 포함하는 수준 높은 FTA가 추진될 경우, 양측은 협상결과물을 글로벌 어젠다로 추진함으로써 다자체계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서구 선진권의 결속은 중국을 자극하여 아시아권의 경제블록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범대서양 지역경제블록에서 배제되는 국가들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을 서두름에 따라 한-중 FTA와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FTA 협상이 탄력을 받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전세계적 FTA 통상 정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미국 및 EU가 기존에 체결한 방송통신 분야 FTA 협상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EU FTA 방송통신 분야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에 대해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미국의 FTA 협상 추진현황

1. 미국의 FTA 협상 추진현황

미국은 지금까지 20여개국과 총 15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TPP를 추진하고, 대서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EU와의

FTA를 개시하였다. 미국은 주로 경제적 이익 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해 FTA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하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견제로 WTO로 대변되는 다자주의체제를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할 수 없게 되자 통상정책의 주안점을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상으로 이동하고 있고, 자국의 통상협상력 자원을 경제적 실익을 달성할 수 있는 FTA로 보다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국가와 양자간의 FTA를 체결하였다면, 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대서양 지역 등 지역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미국 FTA 추진 현황

기체결 FTA	협상중인 FTA	검토중인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05년) • 바레인('06년) • 캐나다('88년, NAFTA로 대체) • 칠레('04년) • 콜롬비아('12년) • CAFTA-DR¹⁾('09년) • 이스라엘('85년) • 요르단('10년) • 한국('12년) • NAFTA('94년) • 모로코('06년) • 오만('09년) • 파나마('12년) • 페루('09년) • 싱가포르('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²⁾ • EU • FTAA³⁾ • 말레이시아 • 태국 •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가나 • 대만 등

1) CAFTA-DR(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미국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5개 중미국가와 도미니카 공화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2)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05.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여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으로 확대되어 협상이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2. 기타결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 주요내용

통신서비스는 막대한 초기 인프라 투자비용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서비스 도입 기에는 정부가 직접 또는 국영기업을 통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많은 국가들에서 통신서비스의 민영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규제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선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협정 당사국의 통신사업자가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때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FTA 협상에서 통신서비스 협정문을 다루게 되었다. FTA는 그러한 경우에 당사국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FTA 타방 당사국의 기존 통신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주고, 상대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당사국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관행을 막는 효과를 얻어, 당사국 사업자가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준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이 체결한 FTA의 통신서비스 챕터(chapter)의 구조는 “공중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일반적 의무사항”,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 원칙”, “기타 조치”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개별 조문들의 내용도 큰 차이가 없다. GATS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가 WTO 회원국별로 차별적인 규제 역사, 배경 등을 수용하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로 인해 그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할 수 있는 FTA를 통해 자국이 원하는 국내규제 관련 조항들로 통신챕터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미국형 통신챕터의 조항들은 WTO GATS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전용회선, 설비병설, 재판매, 번호이동, 해저케이블, 기술표준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다.⁴⁾

미국의 기타결 FTA 중 가장 최근에 발효한 우리나라와의 FTA를 살펴보면 미국이

3)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FTAA):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을 포괄하고자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4) 한-미 FTA 통신챕터의 조문 구조와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한영(2007), pp.173~196 참조.

체결한 기존 FTA의 통신챕터와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4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 조항을 담고 있다. <표 2>는 GATS 통신협정문(GATS 통신부속서 및 통신참조문서), 한-미 FTA 통신챕터, 한-EU FTA 통신협정문(Sub-section D)을 규제사항별로 비교함으로써 한-미 FTA 통신챕터의 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 한-미 FTA 통신챕터는 GATS 통신협정문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고, 한-EU FTA 보다는 규제수준의 폭과 깊이가 훨씬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미 FTA 통신챕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표 2> GATS, 한-미 FTA, 한-EU FTA 통신협정문의 규제수준 비교

구 분	GATS	한-미 FTA	한-EU FTA
범위	부속서 2조 참조문서 도입부	14.1조	7.27조 1항
정의	부속서 3조 참조문서 도입부	14.24조	7.27조 2항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 및 사용	부속서 5조	14.2조	
공중 통신사업자의 일반 의무			
상호접속		14.3조 1항	7.31조 1항
상호접속으로 취득한 정보의 유용 금지			7.31조 2항
번호이동성		14.3조 2항	7.32조
동등다이얼		14.3조 3항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가적 의무			
타방당사국 사업자에 비차별대우		14.4조	
경쟁보장장치	참조문서 1조	14.5조	7.30조
재판매		14.6조	
망요소세분화(UNE)		14.7조	
상호접속	참조문서 2조	14.8조	7.31조 3항~5항
전용회선서비스의 공급		14.9조	
설비병설		14.10조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비포설권		14.11조	

구 분	GATS	한-미 FTA	한-EU FTA
해저 케이블 시스템		14.12조	
부가통신서비스 공급조건		14.13조	
개도국을 위한 기술적 협력	부속서 6조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	참조문서 5조	14.14조	7.28조
보편적 서비스	참조문서 3조	14.15조	7.34조
허가절차	참조문서 4조	14.16조	7.29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참조문서 6조	14.17조	7.33조
통신 및 관련 트래픽데이터의 비밀성			7.35조
통신규제기관의 집행권		14.18조	
국내 통신 분쟁 해결 절차	참조문서 2.5조 (상호접속에 한정)	14.19조	7.36조
투명성	부속서 4조	14.20조	
통신 기술표준에 관한 조항	VI:5조(서비스기술 표준 일반에 적용)	14.21조	
규제적용의 보류		14.22조	

(1) 적용범위⁵⁾

통신서비스 협정문의 적용범위는 통신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며,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및 부가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

(2)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⁶⁾

당사국은 협정 상대국 사업자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

5) 한-미 FTA 제14.1조

6) 한-미 FTA 제14.2조

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

(3) 공중통신사업자의 일반 의무⁸⁾

공중통신사업자의 일반 의무로서 공중통신사업자가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번호이동, 동등다이얼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단, 동등다이얼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선분야 및 한국의 국제전화서비스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4)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⁹⁾

협정문은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사국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 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배적 사업자는 상대국의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자회사·계열사 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관행에 관여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신규제 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상대국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¹⁰⁾ 그리고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전용회선, 설비병설, 전주·관로·도관 및 선

7)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을 위한 구체적 기술 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및 단말기 등 장비의 공중통신망 부착과 관련된 기술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8) 한-미 FTA 제14.3조

9) 한-미 FTA 제14.4~14.11조

10) 또한 지배적 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위해서는 표준상호접속협정 또는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을 선택하여 새롭게 상호접속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로설치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5)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¹¹⁾

협정문은 부가서비스 공급자에게 대중에 대한 일반적 공급, 서비스 효율의 비용상 정당화, 서비스 효율표 제출, 자사 망의 특정 고객과 연결, 공중통신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반경쟁적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거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6) 보편적 서비스¹²⁾

보편적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것 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7)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¹³⁾

협정문은 주파수·번호·선로설치권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할 수 있다.

(8) 통신 분쟁의 해결¹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통신 규제 기관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요청한 상대국 공중 통신

11) 한-미 FTA 제14.13조

12) 한-미 FTA 제14.15조

13) 한-미 FTA 제14.17조

14) 한-미 FTA 제14.19조

사업자의 상호접속의 조건·요율 관련 통신 규제 기관의 심사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통신 규제 기관의 결정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한 기업의 통신규제 기관의 재검토도 요청 가능해야 한다. 또한 통신 규제기관의 결정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한 기업이 사법당국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9) 기술 및 표준과 관련된 조치(기술선택의 자율성)¹⁵⁾

협정문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 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무선분야의 공공정책 목적은 주파수의 효과적·효율적 이용, 국제표준에 근거한 글로벌 로밍 보장, 법집행,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기타결 FTA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미국은 다른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 시장에 있어서도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통신의 경우, WTO 기본통신서비스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주요 회원국들이 시장을 개방하였지만, 방송을 포함한 문화산업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시장개방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미국은 WTO 및 FTA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해 최소한의 제약사항만을 유지하고 있다.

FTA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술하는 방식은 크게 WTO GATS 또는 소위 EU式 FTA의 양허표와 미국式 FTA 양허표가 있다.

GATS나 EU式 FTA의 양허표의 정식 명칭은 ‘구체적 약속표’(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¹⁶⁾이나 통상적으로 양허표(Schedule)라고 한다. EU式 FTA란 EU가 체결하는 FTA로 미국式 FTA의 negative list 방식이 아니라 GATS와 같은 positive list 방식을 사용한다. GATS는 서비스를 155개로 분류한 후, 특정 서비스 분야(sector) 또

15) 한-미 FTA 제14.21조

16) GATS 20조 참조.

는 소분야(sub-sector)를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으면 동 분야에 한하여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개방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분야 기재조건부 양허”(서비스분야를 기재해야만 동 분야가 양허되는 방식)이므로 sector-positive list 방식의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일단 양허된 업종에 대해서는 MA 및 NT 제한사항을 기재해야만 동 제한조치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기재하지 않으면 MA 및 NT 의무가 제한 없이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한사항 미기재조건부 양허”이므로 limitation-negative list 방식의 특징도 있다. GATS나 EU式 FTA의 양허방식은 편의상 positive list 방식으로 통용되지만, 정확하게는 “서비스분야 기재조건부 및 제한사항 미기재조건부 양허”(sector-positive & limitation-negative list) 방식이라 할 수 있다.¹⁷⁾

전술한 바와 같이, GATS/EU 양허방식은 개방대상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positive list 방식, 양허된 부문 내 제한사항 기재는 negative list 방식인데, 미국式 FTA는 보다 넓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방대상 서비스분야까지도 negative list 방식을 사용한다. 미국式 FTA 양허방식은 편의상 negative list 방식으로 통용되지만, 정확하게는 “서비스분야 미기재조건부 및 제한사항 미기재조건부 양허”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제한사항 미기재조건부 양허”와 관련하여, 미국式 FTA는 불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란 용어를 사용하고 불합치조치가 현재유보목록(Annex I)과 미래유보목록(Annex II)에 등재되어야만 MA, NT,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현지거주(Local Presence: LP),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PR), 경영진·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SMBD)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보안 작성 시 모든 투자, 서비스에 대해 MFN, NT, MA, LP, PR, SMBD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Annex I 또는 Annex II 유보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미국은 대부분의 FTA에서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자국 국내법 수준의 동일한

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영덕(2010), pp.9~16 참고할 것.

내용의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있다. <표 3>과 같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주식 자본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 외국인이 주식자본의 25%를 초과하여 소유한(국내 지주)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FCC 의 면허부여 거절 또는 면허취소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사업자·항공로 또는 항공고정국의 허가를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 4>와 같이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및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표 3> 한-미 FTA 부속서 I(현재유보) 미합중국의 방송통신 분야 유보

<p>분 야: 통신-무선통신 *</p> <p>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p> <p>정부수준: 중앙</p> <p>조 치: 47 U.S.C. § 310(a)-(b) 외국인참여에 관한 훈령 12 FCC Rcd 23891, paras. 97-118(1997)</p> <p>유보내용: 투자</p> <p>미합중국은 위 법령 및 규제 규정에 따라 무선 허가의 소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하며, 위 법령 및 규제 규정에는 특히 다음이 규정된다.</p> <p>가. 어떠한 방송국 허가도 외국 정부나 그 대표에게 부여되거나 보유가 허용될 수 없다.</p> <p>나. 어떠한 방송·통신사업자·항공로 또는 항공고정국의 허가도 다음의 당사자에게 부여되거나 보유가 허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또는 그 대표 2) 외국 정부의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3) 주식자본의 1/5을 초과하여 외국인이나 그 대표, 외국정부나 그 대표, 또는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기록상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 그리고 <p>다. 방송 허가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방송국 허가는 주식자본의 1/4을 초과하여 외국인이나 그 대표, 외국 정부나 그 대표, 또는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이 기록상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어떠한 회사에게도 부여될 수 없다.</p> <p>* 무선통신은 방송을 포함하여 무선에 의한 모든 통신을 의미한다.</p>

<표 4> 한-미 FTA 부속서 II(미래유보) 미합중국의 방송통신 분야 유보

<p>분 야: 커뮤니케이션</p> <p>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p> <p>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p> <p>미합중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및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그러한 상호주의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특히 그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합중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국의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p>

III. EU의 FTA 협상 추진현황

1. EU의 FTA 협상 추진현황

EU는 지금까지 총 28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가장 최근에 미국과의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총 11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 및 정치경제적 협력국과의 FTA를 통한 경제통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 역내 시장 통합에 성공한 EU는 국가간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이점을 이해하고 있고, EU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기반으로 탄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왔다.

<표 5> EU FTA 추진 현황

기체결 FTA	협상중인 FTA	검토중인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바니아('09년) • 알제리('05년) • 안도라('91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08년) • 칠레('03년) • 콜롬비아('11년 서명) • 크로아티아('05년) • 이집트('04년) • 페로 제도('97년) • 아이슬란드('73년) • 이스라엘('00년) • 요르단('02년) • 레바논('03년) • 리히텐슈타인('73년) • 마케도니아('04년) • 멕시코('00년) • 몬테네그로('10년) • 모로코('00년) • 노르웨이('73년) • 팔레스타인('97년) • 페루('13년) • 산마리노('92년) • 세르비아('10년) • 남아공('00년) • 한국('11년) • 스위스('73년) • 튀니지('98년) • 터키('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 인도 • 캐나다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우크라이나 • GCC • 러시아 • 메르코수르 • 태국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 그루지아 • 몰도바 • 베트남 • 벨라루스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이라크 • 이란 • 카자흐스탄 • 코소보 • 중국 • 파키스탄 등

2. 기타결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 주요내용

(1) 개요

EU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FTA는 상품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체결한 칠레, 콜롬비아, 페루, 우리나라 등과의 FTA에

서만 통신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협정문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 서는 양국간 IT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선언적 문구만을 담고 있다.

2009년 7월에 타결하고 2011년 7월에 잠정발효된 한국과의 FTA는 “Global Europe”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업그레이드된 FTA 추진정책에 따라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이며, EU가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다.¹⁸⁾ 상술한 바와 같이 EU가 체결한 기존의 FTA는 대부분 상품만을 다루고 있고, 칠레와의 FTA는 WTO 통신 참조문서와 내용적으로 거의 동일하여 미국형 FTA에서 발견되는 통신챕터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통신협정문은 허가절차, 상호접속, 분쟁해결 등에서 WTO 참조문서 보다 심화된 규제수준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별도의 통신서비스 챕터 내용에 합의한 한-미 FTA와 비교시 규제의 스펙트럼이 수평적·수직적 차원에서 좁다고 볼 수 있다.¹⁹⁾

아래에서는 EU가 미국과의 FTA 체결시 통신챕터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들을 담는데 합의할지를 예측하는 데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한-EU FTA 통신협정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다.

(2) 한-EU FTA 통신협정문 주요내용

한-EU FTA 제7장²⁰⁾은 서비스 관련 국내 규제를 Section E Regulatory Framework (규제의 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서비스에 관한 국내규제사항은 Section E의 Sub-section D(통신서비스)에서 10개 조항(7.27조~7.36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 서비스를 포함한 시청각서비스는 Section B(mode 1 & 2)와 C(mode 3)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 적용범위²¹⁾

통신협정문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가 전자기적 신호를 송·수신하는

18) EC(2010), p.1

19) 박영덕(2010), p.41

20) 서비스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Trade in Services, Establishment and Electronic Commerce).

21) 한-EU FTA 7.27조

기본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전신, 전화, 인터넷접속 등 기본통신서비스만이 적용대상이 되며, 방송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및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등 융합서비스는 제외되었다.

2) 통신서비스 시장 진입²²⁾

통신서비스의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간소한 승인절차’(simplified authorization procedure)를 적용하되 번호, 주파수, 선로설비포설권(rights-of-way)의 경우에는 허가제(licensing) 운영은 가능하다. 또한, 허가 기준 및 기간은 공개하고, 허가 거부 시에는 신청자에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허가수수료는 비차별적으로 부과 및 적용되어야 하고, 해당 허가를 관리·통제·집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수수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경매, 입찰 또는 기타 특별허가를 부여하는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대가, 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은 배제되었다.

3)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보장장치²³⁾

지배적 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반경쟁적 관행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협정문은 반경쟁적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초래, 다른 사업자가 서비스 공급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설비에 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반경쟁적 관행으로 예시하였다.

4) 상호접속²⁴⁾

상호접속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간 상업적 협상에 기초하며 사업자간 상호접속에 대한 협상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지배적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망의 모든 지점에서 지배적 사업자 자신, 자회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22) 한-EU FTA 7.29조

23) 한-EU FTA 7.30조

24) 한-EU FTA 7.31조. 지배적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통신사업자도 다른 일반통신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협상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보장된다.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이용을 보장하며 원가지향적 요율을 적용하면서 상호접속을 보장해야 한다.

5) 기타 조치

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²⁵⁾ 또한,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기관의 법적인 분리와 기능적 독립을 보장하고 충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²⁶⁾ 한편, 주파수, 번호, 선로설비포설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²⁷⁾

통신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는 통신분쟁에 관하여 통신규제기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으로부터 불리한 영향을 받은 법적 보호 이익이 있는 서비스공급자는 동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심사기관(appeal body)에게 불복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²⁸⁾

3. 기타결 FTA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EU는 방송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이나,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개방적인 입장이다. WTO GATS 수준에서 이미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완전 개방하는 등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된 FTA 추진정책에 따라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EU FTA에서 EU측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및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을 완전 개방한 것을 알 수 있다(〈표 6〉 및 〈표 7〉 참고).

25) 한-EU FTA 7.34조.

26) 한-EU FTA 7.28조.

27) 한-EU FTA 7.33조.

28) 한-EU FTA 7.36조.

상술한 바와 같이, EU 양허방식은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positive list 방식, 양허된 부문 내 제한사항 기재는 negative list 방식을 사용한다. 한-EU FTA에서 EU측 양허는 WTO DDA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히,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임대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서 양허 수준이 개선되었다.

EU는 GATS 양허에 비해 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임대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추가적으로 양허하였다. 또한 EU는 다음과 같이 3개 역내회원국들이 WTO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통신분야 외국인 투자제한에 대하여 그간의 법 개정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철폐함으로써 양허를 개선하였다.

- 프랑스: 무선통신분야에서 20% 직접투자 제한 철폐
- 폴란드: 통신분야에서 49% 직접투자 제한 철폐
- 슬로베니아: 통신분야에서 99% 직접투자 제한 철폐

〈표 6〉 한-EU FTA 부속서 7-가-1, 유럽연합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국경 간 서비스 공급)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통신서비스 이 서비스는 그 운송을 위하여 통신서비스가 필요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a) 모든 전자적 수단에 의한 신호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된 모든 서비스, ²⁹⁾ 방송 ³⁰⁾ 은 제외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b) 위성방송 전송서비스 ³¹⁾	공급형태 1 및 2 회원국 전부를 포함한 유럽연합: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는 전자 통신에 대한 유럽연합 규제들에 따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 이익 목표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벨기에: 약속 안함.

<표 7> 한-EU FTA 부속서 7-가-2 유럽연합 당사자 제7.13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통신서비스 이 서비스는 그 운송을 위하여 통신서비스가 필요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않음.	
a)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된 모든 서비스, ³²⁾ 방송 ³³⁾ 은 제외	제한 없음. ³⁴⁾
b) 위성방송 전송서비스 ³⁵⁾	회원국 전부를 포함한 유럽연합: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는 전기 통신에 대한 유럽연합 규제 틀에 따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 이익 목적을 보호하는 의무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벨기에: 약속 안함.

- 29) 이 서비스는 1.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된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CPC 843의 일부)을 포함하지 않는다.
- 30)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자 간의 중계 연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31) 이 서비스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통신서비스(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성을 통한,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를 포함한다. 이 서비스는 위성서비스 이용의 판매를 포함하나 가정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서비스는 국내간 연결(위성에 의한 국내 영토로부터 국내 영토로의 전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32) 이 서비스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된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CPC 843의 일부)을 포함하지 않는다.
- 33)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자 간의 중계 연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34)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은 일정한 통신 운영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유지함. 그러한 회원국은 미래에도 이러한 지분 보유를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는 시장접근 제한이 아님. 벨기에에서 벨가콤에 대한 정부의 지분 보유와 의결권은 정부기업의 개혁에 관한 1991년 3월 21일자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현재의 사례와 같이 입법권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됨
- 35) 이 서비스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통신서비스(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성을 통한,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를 포함한다. 이 서비스는 위성서비스 이용의 판매를 포함하나 가정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IV. 미-EU FTA 방송통신 분야 협상전망

1. 협정문 협상전망

협정문 협상의 경우, 미국은 한-미 FTA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된 통신챕터를 통해 심도 있는 규제 내용을 담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금까지 독립된 별도의 통신챕터를 도입한 사례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통신분야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금번 미-EU FTA 협상에서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흥미롭게 관찰해야 할 부분은 미국과 EU가 최근 ICT 서비스 무역원칙(Trade Principl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rvices)³⁶⁾이라는 포괄적인 교역원칙을 채택하였는데, 동 원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에 미국이나 EU가 체결한 FTA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규범들을 담은 통신협정문 템플릿(template)을 성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통신협정문은 GATS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를 기반으로 성안된 것인데, 통신부속서의 경우 1994년까지 논의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참조문서는 1997년에 타결된 기본통신 협상의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간의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ICT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미국은 구글, 애플과 같은 자국의 ICT 사업자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 조건이 되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범들을 국제규범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가 ICT 서비스 무역원칙에서 담고 있는 규범들을 FTA 통신협정문을 통해 규범화하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를 통해 동 템플릿을 적용시킨다면 향후 다자간 규범으로 확산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6) EU-미국 ICT 서비스 무역원칙은 미국과 EU가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범대서양 경제 위원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차원에서 채택한 정치적 선언문으로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EU-미국 ICT 서비스 무역원칙 주요내용

원칙	내용
1. 투명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교역과 관련된 정부 법, 규정, 절차, 행정조치 공중에 제공 대중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보장
2. 개방된 망, 망접근 및 사용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망 접근의 자유 보장(소비자의 정보 접근 및 유통과 선호하는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이용 보장) 인터넷 통한 국경간 공급 서비스의 제한 금지 위 서비스의 기술중립성 및 상호호환성 보장
3.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정보, public 정보의 국내 및 국외 전송, 접근 제한 금지 - 국경간 정보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정부의 사업자/소비자에 대한 제한 금지
4. 현지 인프라 사용 의무화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현지 주재(local presence)를 요구하거나 현지 인프라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국 인프라, 자국전파 및 위성 자원 등의 이용에 있어 국내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
5. ICT 분야에 대한 완전한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분야에 대해 설립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한 외국인의 완전한 참여 허용
6. 주파수의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 효과적인 방식으로(ITU-R 권고 등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을 극대화할 것 경쟁 및 혁신을 목적으로 상업적 주파수를 객관적으로,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분배할 것 상업적 주파수 배분을 위해 경매와 같이 공평하고, 시장중심적 방법을 이용할 것
7. ICT 분야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기관이 ICT 분야의 모든 서비스 공급자와 법적으로 구별되고 기능적으로 독립되도록 보장 규제기관은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공정하며, 그의 결정과 조치는 공개되도록 할 것
8. 허가체계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 요건을 가능한 간소화 할 것 - 서비스 공급조건에 법적 설립요건을 두지 말고, 단순 신고를 통해 승인 - 주파수 분배 등 꼭 필요한 규제사항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가 제도를 유지
9. 상호접속 관련 GATS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상 의무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에 있어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통신부속서 및 통신 참조문서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 통신사업자는 지배적 사업자와 가격지향적, 비차별적, 투명한 요율로 협상 및 상호접속할 것
10.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의 디지털 활용률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간 협력할 것

2. 시장개방 협상전망

시장개방의 협상의 경우,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핵심쟁점은 양허안 기술 방식과 관련하여 소위 EU式 FTA의 양허표와 미국式 FTA 양허표로 할지를 결정하는 사안과 방송분야의 포함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허방식의 경우, 서비스 전반에 걸친 형식의 문제임으로 방송통신 분야와 한정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式 FTA 양허표, 즉 negative list 방식을 사용할 경우,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새로운 유형의 방송통신 서비스의 경우, 유보사항을 기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상대국 시장에 완전 개방되게 된다. 따라서 EU는 지금까지 negative list 방식을 꺼려했으나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기존의 EU式 FTA의 양허표와 미국式 FTA 양허표를 혼합한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분야의 포함여부와 관련, EU는 문화적 정체성을 이유로 방송분야를 포함한 문화산업 전체를 FTA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문화산업을 어떻게든 FTA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문화산업에 대한 통상협상 과정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이미 인정한 선례가 있어 방송분야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³⁷⁾ 하지만 콘텐츠와 전송을 분리하여 규제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양측간 양허 균형이 달성된다면, 콘텐츠 제작 이외의 전송 부분에 대한 개방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의 TPP를 통한 범태평양 지역 공략과 미-EU FTA를 통한 범대서양 지역 공략은 중국의 적극적 FTA 추진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 범대서양경제블록에서 배제되는 주요국들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37) 미국이 1988년 캐나다와 체결한 FTA에서 캐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문화산업에 대해 협정문 적용 예외를 받아주었다.

통합을 서두름에 따라 한-중 FTA와 한-중-일 FTA 등의 협상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EU FTA에서는 규제이슈와 글로벌 통상규범에 관한 내용이 어젠다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현재 미국, EU가 기체결한 FTA 통신협정문의 내용에 더해 EU-미국 ICT 무역원칙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새로운 통신협정문의 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가 ICT 서비스 무역원칙을 반영하여 통신협정문을 채택한다고 해도 양국간에만 적용되는 규범이지만, 동 협정문을 기반으로 향후 양자 또는 다자 차원에서 동 규범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WTO 차원에서도 미국과 EU가 전자상거래 논의와 관련하여 ICT 서비스 무역원칙을 문서로 제출하며 논의를 촉발한 점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³⁸⁾ 이러한 맥락에서 동 원칙의 포괄범위, 세부문안을 살펴보고 우리 법과의 충돌문제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EU가 한-미 FTA와 한-EU FTA의 정합성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미, 한-EU FTA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이슈가 있다면 한-미, 한-EU FTA 이행협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미-EU FTA 시장접근은 양측이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한-미, 한-EU FTA 방송통신 분야 개방수준과 비교하여 미래 최혜국대우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성웅 (2009), “EU회원국의 통신시장규제 이행점검: EU집행위원회보고서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정책> 21(21), pp.25~55.

박영덕 (2010), “한-EU FTA 통신서비스협상의 결과와 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38) WTO(2011), “Briefing note: Electronic commerce”

- 트 10-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여혁종 (2012), “미국의 ICT 서비스 무역원칙 추진 동향”, <방송통신정책> 24(21), pp.68~74.
- 이한영 (2007), 『디지털@통상협상 - UR에서 한미까지』, 삼성경제연구소.
- 이한영 외 (1997), 『WTO 기본통신협상 종합분석 및 정보통신시장 개방전략 비교 연구』, 연구보고 97-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
- _____ (2007), 『WTO FTA 병존구도 하의 IT 통상정책 연구』, KISDI 위탁연구 07-21, 정보통신정책학회(2007).
- 정부관계부처합동 (2009), 『한 - EU FTA 상세설명자료』, 2009. 10.
- 통신개발연구원 (1997), 『WTO기본통신협상 종합보고서』, 참고자료 97-01, 통신개발연구원.
- BNA (2013). “South African envoy says proposed US-EU Trade deal threatens WTO system”.
- _____ (2013). “European Commission expects mandate by June to launch EU-US free trade talks”.
- EC (2010).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A Quick Reading Guide”.
- WTO (2011). “Briefing note: Electronic commerce”, 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11_e/brief_ecom_e.htm
- EC 홈페이지,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international/facilitating-trade/free-trade/index_en.htm
- USTR 홈페이지,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
- 한국-미국 FTA 협정문
- 한국-EU FTA 협정문